

전주지방법원 2021. 5. 26 선고 2019가단2385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
담당변호사 우승원

피 고 A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원
담당변호사 최민중
변 론 종 결 2021. 4. 21.
판 결 선 고 2021. 5. 26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B과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18. 7. 19. 체결한 (근저당권)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
이 유

1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

원고는 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7. 19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 등 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.

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의 1, 2,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B과 피고는 2018. 7. 19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한 후 2018. 7. 20. 근저당권자 피고, 채권최고액 2억 5,000만원, 채무자 B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’라 한다)를 마쳤는데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선순위로 근저당권자 C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,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B 소유 부동산들에 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선순위근저당권자인 C회사가 우선 배당받음으로써 후순위근저당권자인 피고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,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고, 한편 선순위근저당권자인 C회사에 대한 배당이의소송이나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을 통하여 피고가 후순위저당권자로서 추가로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.

사정이 위와 같다면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. 채무자와 수익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면 그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으로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근저당권자임을 전제로 배당절차 등에서 부당한 이득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막기 위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,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가 후순위저당권자로서 추가로 배당받거나 근저당권자임을 전제로 권리를 행사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할 가능성조차 있다고 보기 어렵고, 취소하더라도 원고나 다른 채권자에게 아무런 이익도 없는 경우에도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곽경평

부 동 산 목 록

1. 전라북도 김제시 D 창고용지 1245㎡

2. 전라북도 김제시 D

[도로명주소] 전라북도 김제시 E

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창고시설 냉장창고 496㎡, 끝.